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71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 07. 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11. 14.]

www.kidsnreading.com

『키즈엔리딩』

정보공개서

키즈엔리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키즈엔리딩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키즈엔리딩』 가맹사업본부 주소 및 연락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8길 11(인현동2가, 세운빌딩)		
대표 전화번호	02-373-6578	대표 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관리팀	담당자 전화번호	02-373-6578
홈페이지	www.kidsnreading.com	담당자 이메일	wakulhs@hanmail.net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서류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키즈엔리딩	영업표지		키즈엔리딩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8길 11(인현동2가, 세운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9.08.15.	원영빈	02-373-6578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411-43-00508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키즈엔리딩	Kids&Reading 리딩을 디자인하다
상 호	키즈엔리딩 _____분원	-
상표(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41-0244429호
그 밖의 영업표지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6,444	234	16,210	172,712	-46,992	-46,473
2022년	29,064	659	28,404	195,924	7,718	7,318
2023년	80,757	677	80,080	287,636	23,317	22,893

※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원영빈	대표	2009.7.~현재	대표	기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3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가맹점운영	등록 2012.11.12	등록 41-0244429	원영빈	2032.11.1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6년 6월 15일(추정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9년 07월 27일)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키즈엔리딩	키즈엔리딩	원영빈	2016.5. ~ 2019.8.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73, 401, 402호(상암동, 월드프라자)
키즈엔리딩	키즈엔리딩	원영빈	2019.8. ~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8길 11(인현동2가, 세운빌딩)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키즈엔리딩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교육	영어리딩수업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4	83	1	68	67	1	62	61	1
서울	21	20	1	19	18	1	14	13	1
부산	4	4	0	4	4	0	4	4	0
대구	3	3	0	1	1	0	1	1	0
인천	8	8	0	6	6	0	7	7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1	1	0	1	1	0	0	0	0
울산	1	1	0	1	1	0	1	1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30	30	0	22	22	0	26	26	0
강원	4	4	0	4	4	0	2	2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1	1	0	1	1	0	1	1	0
전북	2	2	0	2	2	0	1	1	0
전남	1	1	0	1	1	0	0	0	0
경북	4	4	0	3	3	0	3	3	0
경남	3	3	0	2	2	0	1	1	0
제주	1	1	0	1	1	0	1	1	0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전부터 컨설팅형태의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당사의 직영점은 상업시설 어학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가맹점은 일반 가정에서 운영하는 공부방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 국내 가맹점 외 해외(말레이시아) 몽키아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몽키아리점 소재지: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리, 연락처: 60-17-654-9151, 계약일: 2023-05-26)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71	14	0	2	0	83
2022	83	6	0	22	0	67
2023	67	7	13	0	0	61

- ※ 당사는 상기 국내 가맹점 외 해외(말레이시아) 몽키아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몽키아리점 소재지: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리, 연락처: 60-17-654-9151, 계약일: 2023-05-26)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61	-	-	-	-	-	-	
서울	13	-	-	-	-	-	-	
부산	4	-	-	-	-	-	-	
대구	1	-	-	-	-	-	-	
인천	7	-	-	-	-	-	-	
광주	0	-	-	-	-	-	-	
대전	0	-	-	-	-	-	-	
울산	1	-	-	-	-	-	-	
세종	0	-	-	-	-	-	-	
경기	26	-	-	-	-	-	-	
강원	2	-	-	-	-	-	-	
충북	0	-	-	-	-	-	-	
충남	1	-	-	-	-	-	-	
전북	1	-	-	-	-	-	-	
전남	0	-	-	-	-	-	-	
경북	3	-	-	-	-	-	-	
경남	1	-	-	-	-	-	-	

제주	1	-	-	-	-	-	-	
----	---	---	---	---	---	---	---	--

※ 당사는 중앙 POS시스템을 운영하지 하지 않고, 각 가맹점의 매출액 역시 각 지역별 관할 교육청의 학원비 책정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기재하지 않습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61	1,36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1~2023.12	414	414	0	
광고	소계		414	414	0	
판촉	소계		0	0	0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상암DMC금융센터)	프랜차이즈예치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빌딩 비즈니스타워 1	02-374-99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wooribank.com) 접속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이용시	(가맹금예치제도)클릭→ ⑤ (가맹점사업자)클릭 → ⑥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⑦ 가맹금예치 완료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우리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우리은행에서는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키즈앤리딩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최근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당사는 영어학원어학원형과 교습소형, 공부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영어학원어학원	교습소	공부방			
가맹비	22,000	11,000	8,8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비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단, 소멸성 비용 이외의 것은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반환될 수 있음)	
개점 전 교육비	5,500	5,500	5,500		개점 전 교육비의 경우 1회 교육 시 전액 반환 안 됨	
총계	27,500	16,500	14,300			

※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 영어리딩 교육, 교재 사용 권한 및 컨설팅 대가입니다.

※ 단, 최초 가맹계약자는 초도물품비용을 면제합니다.

※ 공부방 및 교습소에서 영어 학원 및 어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맹금의 차액분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총계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영어학원어학원	교습소	공부방
가맹비	22,000	11,000	8,800
개점전 교육비	5,500	5,500	5,500
(현금)보증금	0	0	0
합계	27,500	16,500	14,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33㎡)

구분	품목	규격	금액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비고
교재 등 상품	※별첨 [공급상품리스트] 참조	당사기준	-	권유 또는 강제	지정업체 (미정)	초도물품은 가맹비에 포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 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외 다른 내역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공·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영업표지기준과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점포의 면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 면적 3.3㎡당 금액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학원형 개설내역의 경우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그 밖의 영업신고, 철거비용, 사업자 등록 발급, 전화 개설,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 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 공부방은 가맹점사업자의 집에서, 교습소는 21평 미만으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21평 이상은 영어학원, 어학원으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개점 전 교육 이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 '키즈엔리딩'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아래 참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 자측이 배분하여 부담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당사기준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III.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로열티 기준 ☞ 가맹계약서 제21조 참조

가맹계약서 제21조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지원과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정된 로열티 100만 원(VAT 별도)을 계약 체결 후 매년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7일 이전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로열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기수별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특약 조건이 우선시 된다. ③ ‘가맹본부’는 기타 경제여건 등 당해 사정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 시 로열티의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비용은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되지 아니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

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교재 등 일부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맹점매출현황을 알 수 없고, 개
설시 외에 공급하는 품목이 미미하여 차액가맹금을 계산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청결상태, 재고관리)에 대한 영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점검하
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
성 및 전문성,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설비에 대하여 교체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서면보고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의 직원
이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계약 가맹비	※아래 참조	재계약 전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반환	소멸성 반환되지 않음	

※ 1년 재계약 시 : 일금 1,000,000원(부가세별도), 2년 재계약 시 : 일금 2,000,000원(부가세별도) -
기존의 공부방/교습소의 경우에 해당되면, 학원형으로 할 경우 상담을 요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
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
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

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키즈엔리딩'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개점 전 교육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항목	금액
가맹비	면제
교육비	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키즈엔리딩과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 및 카페 홍보글, 포스팅, 공식홈페이지에 사용된 가맹점의 사진은 계약종료 이후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①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폐업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가맹본부’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홍보물, 후기, 기타 모든 게시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 개인 블로그 혹은 카페의 게시물에도 ‘가맹본부’의 상호, 광고물, 전단지, 교육방법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와의 연관검색어를 이용하거나 ‘가맹본부’를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다. ④ [키즈엔리딩]과 관련된 모든 youtube 기타 인터넷 상의 모든 동영상과 사진 일체에 대한 권리는 ‘가맹본부’에 있으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업 자료의 대여를 중단하고 계약 종료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8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의미합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격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키즈엔리딩]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원)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 2) 당사가 [키즈엔리딩]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교재 및 교구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초등학생 외 제3자				

※ 당 가맹사업은 초등학생 영어공부방으로 거래상대방(고객)을 초등학생으로 제한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24.6월 기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영어공부 업종	키즈엔리딩	해당없음

☞ 기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국내 전 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브랜드의 정체성이 침해되는 동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 및 유사사업(스터디룸, 독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6개월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국내 전 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유사하게 변경하여 동종 및 유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④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 (공부방 2000세대, 교습소 3000세대를 원칙으로 추가로 완충지역 1,000세대를 포함하며 학원, 어학원의 경우 5000세대를 원칙으로 한다)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별첨1])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가맹계약서 [별지1]에 표기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백화점, 쇼핑몰, 터미널 등 특수 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③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⑤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키즈엔리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당사는 매장 POS 등 가맹점의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일부 품목만 납품하여 가맹점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신입원장교육 시작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재계약 시 반드시 사전에 당사와 재계약기간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및 로열티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운영 매뉴얼, 전산 프로그램, 세부 운영규칙 등을 연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교육의 품질과 관련되는 교수법, 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운영기법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36조 제2항 각 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

맹본부'가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하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날 60일 전에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7조 제5항)

1.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4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물품, 프로그램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0.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1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 프로그램 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12.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품/프로그램 공급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제24조 1항)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프로그램 등 중단 사유

1.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등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하거나 타 업체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가맹계약서 37조 6항)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수정계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운영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개업지원대가로 최초가맹비의 (50)%와 계약이행 보증금(있을 경우)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귀하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당사의 승인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기간 종료 후 국내 전 지역에서 6개월 간 귀하가 [키즈엔리딩]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유사사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영어공부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 다만, 귀하는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 또는 다른 과목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3시 ~ 19시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간 5일(월~금)간 매일 개원	문의: 가맹관리팀

※ 귀하는 휴업하기 위해서는 휴업 2일전 가맹본부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7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

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없음	직접 근무	해당없음	

※ 당 가맹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공부방 사업으로 반드시 1인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적,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 3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전체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항	계약서
④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계속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간판,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 영업표지의 일부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⑨ ‘가맹점사업자’는 ‘키즈엔리딩’에 관한 일체의 이미지물,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점사업자’자신의 가족, 직원 기타 관계자들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교육자료, 가맹점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고객정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상기 계약한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계약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에도 제39조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제31조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항	계약서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키즈엔리딩]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금 일천만원(W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제31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일천만원(W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제39조

에게 금 일천만원(W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해지 등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기존 ‘가맹본부’의 영업장소에서 키즈엔리딩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삼천만원(W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공부방은 금 구백만원(W9,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가맹점사업자’는 상기 계약한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계약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에도 제39조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제31조
①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본부에 개점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의 손실과 기대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위약벌을 가맹본부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개별계약을 통해 기 진행된 가맹점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철거에 대한 비용을 본 조의 위약금과 별도로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개점 이전이라도 위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개점 후 가맹점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본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개점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해액 등을 확인하여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른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1. 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입비와 교육비(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2.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입비와 교육비(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제11조의 최초가맹금은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되지 않는다. 다만, 가맹점 개점 이전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전항의 가맹비는 다음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된다.		제13조
해약요청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최초예치가맹금의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최초예치가맹금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최초예치가맹금의 예치금의 5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운영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운영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80일 내외	7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7페이지 참조
교육 실시	- 운영교육 실시	70일(약10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항	계약서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제42조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 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 교육	프로그램운영, 학습방법, 교재 등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까지	필수 교육
정기교육 (세미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과정에 대한 교육	집단 강의	통지 후 30일내	필수 교육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입문 교육	약 5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 (세미나)	매달 1회(단, 방학기간 제외)	실비 위주로 청구될 수 있음 (교통비, 숙박비 별도)	필수적으로 이수

※ 교사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교육의 100%를 이수해야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조항	계약서
① ‘가맹점사업자’는 [키즈엔리딩] 가맹점사업자로서 효율적인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5주간의 교육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본부가 조정할 수 있다. 경영자 과정 교육 및 연수를 수료하여야 하고, 기본 5주 교육 훈련 수료 후 가맹점운영을 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점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개점 후에는 키즈엔리딩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꾸준히 참석하여 키즈엔리딩 교육의 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 참석율이 70% 이하인 경우 재가맹계약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5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본원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3 월드프라자 401,40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7년 4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25,181천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3]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명	권장학년	권장수업정원	권장수업시간	권장판매가
영어책 영어리딩수업	초등 1~6년	6명	60분 이상 / 주3회*	18만원~28만원 (※본사와 별도 협의)

※모든 수업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정품 교재를 활용하여 진행되며, 1인 1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복사본의 사용을 금합니다.

[별첨4] 예치신청서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키즈엔리딩]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키즈엔리딩]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